



소중한 당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드립니다.

희망키움 통장 II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뜨거운 여름이면 시원한 가을을 기대하고,
비바람 부는 오늘이지만
내일은 화창한 새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듯이..

인생의 긴 여정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버티고 이겨내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날들이 펼쳐지리라는 믿음이 있다.

「희망키움통장 자활성공수기」 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자활센터

가입문의 해당 지자체 및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상품문의 하나은행 1599-0079

년 월 일

적요

지급금액

예입금액

잔액

거래점

소중한 당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 드립니다.

3년 동안 본인 매월 저축(10만원)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함께 지원하여 드립니다.

step 1. 매월 본인 저축

가입자는 매월 10만원을 저축 합니다.

step 2.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상·하한 기준을 유지 합니다.

step 3. 매월 정부지원금 적립

정부는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을
가입자의 통장에 적립 합니다.

step 4. 3년 동안 통장 유지 시 본인 저축액 + 이자 + 정부지원금 수령

3년 동안 통장에 가입할 경우,
본인저축액(360만원)+이자+정부지원금(360만원)을 수령 합니다.

* 희망시 본인 통장은 총 5년간 유지 가능

꿈을 위한 희망의 계단을 밟아 보세요

님

예금종류 희망키움통장 II

예금내용 소중한 당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 드립니다.

방문일 Date

서명 Sign

확인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 입니다.

희망키움통장 II는 근로 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I : 수급자 가구 가입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가입



년 월 일

적요

지급금액

예입금액

잔액

거래점

희망키움통장 II는 여러분의 자립을 지원합니다.

주택구입·임대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본인·자녀의 교육

내 일을 위한 교육과
아이의 꿈을 지원합니다.

사업 창업·운영자금

꿈꿨던 가게를 열어
땀의 결실과 일의 보람을 만끽합니다.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 II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 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 ③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 ④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 충족

	가입기준(하한~상한)	유지기준(~상한)
1인가구	543,063원~ 724,084원	~1,993,677원
2인가구	924,675원~1,232,900원	~1,993,677원
3인가구	1,196,206원~1,594,942원	~1,993,677원
4인가구	1,467,738원~1,956,984원	~2,446,230원
5인가구	1,739,270원~2,319,026원	~2,898,783원
6인가구	2,010,801원~2,681,068원	~3,351,334원

2014년 기준

▶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
합니다.

접수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서류

▶ 자격확인을 위해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제출필요

지원조건

- ▶ 적립된 금액(본인적립금, 정부지원금)은 3년 간 통장 유지하고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됩니다.
-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가입 유지기준을 벗어나거나
본인 저축액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을 연4회 미만 참여(교육 연2회 필수)할 경우 중단
해지 됩니다.
- ▶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최대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 적립 중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소득이나 가구원 등을 하위로 신고하여 지원금을 위법, 부당하게 지원
받는 가입자는 부적격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운영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만기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